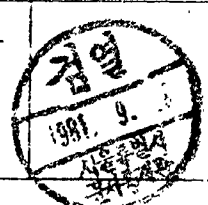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 이 442- (전화번호)	전 결 규정	조 항 전 결 사항
처리기간	시 장		
시행일자	결재 1987. 9. 28		
보존년한			
· 보 조 기 관	도시계획국 장 전결	합 조	지수과장
	도시계획2과 장		법무담당관
	가로계획2과 장		가로계획1과장
기안책임자	강창규	1987. 9.	
경 유 수 참 제	관안참조	발 신	통 제
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과 지적정리			
제 1 안 내부결재			
<p>1. 당국관내 면적은 777일대 면적권을 복개하여 우수 소통 및 지역교통을 원활히 하고 주변을 정비, 토지이용을 증대코자 하수국 요청으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1979.5.16자 서울시고시 제 210호로 결정 된 지적승인 하였으나,</p>			
<p>2. 본 개공사가 완료되어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당초 도시계획 결정 된 지적승인시 측량상과도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정한 측량상과도의 지적이 상이하여 지적변경이 불가피한바, 급변 대한 지적공사에서 새로 측정한 지적현황 측량상과도에의거 전구간 지적정리로자 하나,</p>			정서
<p>3. 79.6.26 착공, 1987.6.30자 면적권 복 개공사가 준공됨에따라 시공선예의기 대로 3-138 (면적동 639일대)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 12조, 제 13조 및 시행령 제 7조의 2와 건설부고시 제463호(79.12.10) 외 권한위임 사항예의기 병안과같이 변경 고시코자 합니다.</p>			관인 발송



4. 본건은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(건설부 훈령 제519호) 제3조

3항 및 제5항과 제4조 1항에 준한 것입니다.

제 2 안 지적정리

1. 1979.5.16자 서울시코시 제 210호로 고시된 당시관내 면목동 대 3-138호의 20개 노선에 대하여 급변 대한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측량 성과도 이외의 전구간 지적 정리하여 관할구청에 통보 겸람도 정리로 처리합니다.

제 3 안 고시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, 제 13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와 건설부고시 제463호(79.12.10)와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

1981. 9.

0. 노선조사 서울특별시청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대로	3	138	25 ^M	600 ^M	대2-23)면목유수지	중2-82	
변경	"	"	"	"	"	"	"	시정부근시공선
기정	소로	7		10	1700	면목동 345	면목동 130	예외거목원
변경	"	"	"	"	"	"	"	일부조정

* 별첨 도면표시와같음(도면생략)

제 4 안

수신 : 건설부장관

제목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

1.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별첨과같이 고시하였기

결재

보고합니다.

2. 본건은 도시계획변경 통제 규정(건설부훈령 제 515호) 제3조 3항 및 5항과 제 4조 1항에 준한 사항입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. "끝.

제 5 안

수신 : 총무처장관(시: 문화공보관)

발신 : 시(국)장

제목 : 관(시)보 게재의뢰

1. 다음과같이 관(시)보 게재 의뢰합니다.

가. 구분 : 고시

나. 건명 :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

다. 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 및 시행령 제 7조의2

라. 게재내용 : 별첨 고시문 사본

첨부 : 고시문 사본 2(1)매. "끝.

제 6 안

수신 : 동대문구청장

발신 : 시 장

제목 : 동 건

1. 귀구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이 별첨과같이 지적정리 및 변경 고시되었기 통보하니 관계도면 정리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착오없도록 할것.

첨부 : 1.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.

2. 지적정리 도면 1부. "끝.

제 7 안

수신 : 하수국장

발신 : 국장

참조 : 치수과장

제목 : 동 건

1. 키수415-629호(81.8.24)와 관련사항입니다.

2. 위 대호로 요청하신 면목천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별첨과

같이 지적정리 및 고서되었기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* 끝

결재

1981. 9. 28